

不正競争行爲에 관한 考察(8)

2. 행정적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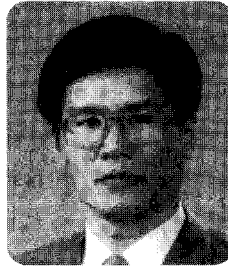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민사적 규제 방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정적 규제에 의한 규제 방법이 있다.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특허청장 자문기관으로 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7). 즉 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어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 및 부정경쟁행위에 시정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지침의 수립, 기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8).

즉 법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청장 또는 각 시·도지사는 부정경쟁행위 등의 상표사용금지에 대한 위반행위가 신고·認知 또는 司法機關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中止하거나 標識을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是正에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是正勸告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윤선희 · 상지대학 법학과 교수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是正勸告를 받은 자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찰 또는 경찰 등 사직당국에 고발한다. 특허청장은 시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확인 결과 부정경쟁행위

의 상표사용금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위반행위자가 확인을 하게 한 후 서명날인을 받는다. 다만 도피·부재·거부 등으로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의 시정권고를 듣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직접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특허청장 또는 각 시·도지사는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 결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찰 또는 경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이 때 고발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 등의 상표사용금지에 위반된 행위를 야기시킨 상표나 상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한 자.

b) 적발당시 위조상표나 위조상품의 재고량이 30점미만인 판매업자라 할지라도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적발한 경우.

c) 적발당시 위조상표나 위조상품에 재고량이 30점 이상인 판매업자.

d) 적발당시의 위조상표나 위조상품의 재고량이 30점 미만인 판매업자라 할지라도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최근 2년 이내에 告發을 당한 자가 재적발된 경우.

e) 기타 국내외적으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허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정경쟁행위자 등이다.

특히,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될 것이며, 조사한 자료는 형사절차 등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간접적인 효력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특허청장은 이러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 §9). 이와 같은 의견청취의 절차는 의견청취예정일 7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때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의견청취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진술은 관계 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특허청장은 시정권고 및 의견청취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효과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특허청장, 재위임한 시·도지사는 위임된 업무의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임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나 국기 등의 상표사용금지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3. 형사적 규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법익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라는公益과 영업상의 신용이라는私益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법률이다. 그리하여 이 양자의 어느 쪽에 중점을 들까는 각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다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이러한 각호의 입법취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법 §18).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제18조에 따라 처벌되는 외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도 제18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부정경쟁방지법 §19).

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중심으로 부정경쟁행위를 살펴 보았다.

즉 먼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목적과 보호 법익론을 살펴 보았고, 부정경쟁행위를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1호상의 유형 분류에 따라 ① 상품 주체혼동야기행위, ② 영업주체혼동야기행위, ③ 원산지허위표시행위, ④ 출처지등오인야기행위, ⑤ 질량오인야기행위로 나누어 각각 살펴 보았다. 특히 ①·②의 행위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주지성 요건과 혼동가능성 요건을 중심으로 당해 행위 유형을 살펴 보았으며, ③·④·⑤의 행위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TRIPs협정상의 지리적 표시를 함께 살펴 보았다. 또한 각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법적 구제 수단을 살펴 보았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상에서 열거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업자에 대하여 부정경쟁 방지법이 인정하고 있는 민사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4), 손해배상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5)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6) 등을 살펴 보았으며, 특허청장의 시정권고(부정경쟁방지법 §8) 등의 행정 규제와 동법 제18조(罰則)와 제19조(兩罰規定)에서의 형사적 구제를 살펴 보았다.

본 논문은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작성된 것임(필자 주)

발특9706

'97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관람안내

한국의 발명왕을 꿈꾸는 학생발명의 잔치

'97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가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1,700여명의 학생이 참가, 1차심사와 2차심사를 거쳐 최종으로 입상한 학생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서울전시회와 지방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97전일본 학생아동 발명창작전에서 상위 입상한 작품 14점이 서울 전시회(KOEX)에 전시되어 학생들과 발명반 지도교사들에게 양국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발명품 교류전시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서울전시회

KOEX 제8전시실 : '97. 7. 18~24(6일간)
발명장려관(발명회관내) : '97. 7. 29~8. 11(14일간)

지방전시회

전 주 (9월)
대 전 (10월)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부
전화 : 557-1077/8 (내선 234, 담당:김유현)